

전주지방법원 2024. 12. 11 선고 2023나1951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4. 12. 11 선고 2023나19511 판결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. 9. 26 선고 2023가단10724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단체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

담당변호사 김진모, 하동규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

변론종결 2024. 10. 30.

판결선고 2024. 12. 11.

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. 9. 26. 선고 2023가단10724 판결

주문

1.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와 C 사이에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11. 17. 체결된 매매계약을

53,681,5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53,681,5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주문과 같다1) (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 등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를 ‘2)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구상금채권액은 53,681,546원[= 원금 47,305,081원×{1+2502) /365}×약정 지연손해금을 연 8%}, 원 미만 버림]이다.’로, 제6쪽 제12, 13행과 제7쪽 10, 11행의 각 ‘49,171,363원’을 각 ‘53,681,546원’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.

재판장 판사 고연금, 판사 송인우, 판사 설민수

1) 원고는 2024. 10. 28.자 참고서면에 53,684,804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,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

볼 때 오산임이 명백하다(원고는 2024. 10. 30.까지의 채권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계산은 2024. 10. 31.까지로 하였다).

2) 대위변제일인 2023. 2. 24.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4. 10. 30.까지의 총 일수